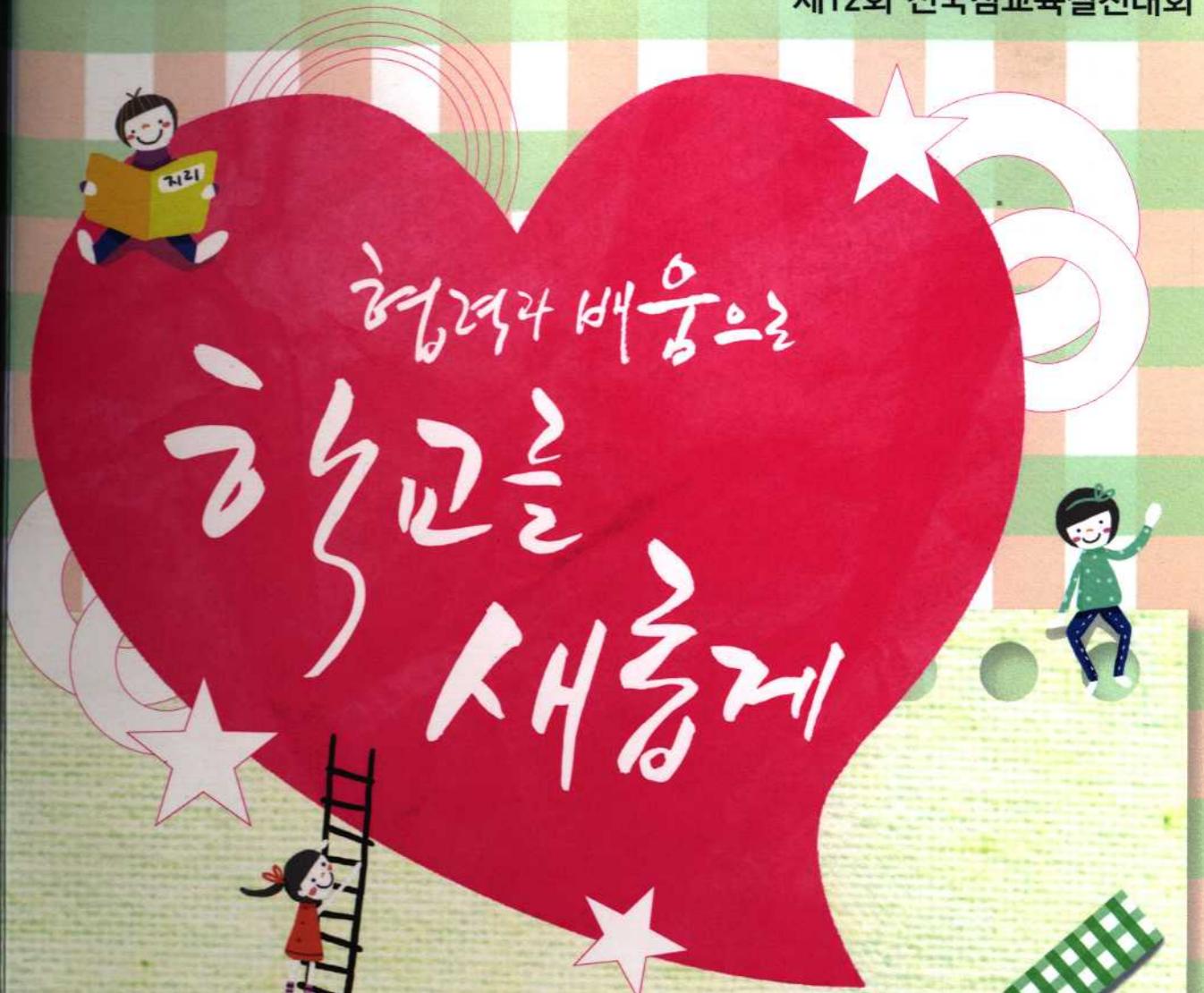




참교육 실천강령

우리는 교육민주화 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참교육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1.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인권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한다.
1. 우리는 서로 돋고 협동하는 학습의 원리를 구현한다.
1. 우리는 학생자치를 존중하고 돋는다.
1. 우리는 동료 교사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한다.
1. 우리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한다.



폭력 사회, 폭력 학교에
갇힌 교육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 2013. 1. 15~1. 17
|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선택 2013,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의 강점!

- ✓ 2012년 취업률 공시 전국2위!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공시, 졸업자 3,000명 이상 '가'그룹)
- ✓ 인문학적 소양강화 / 의·생명 / 그린에너지 / 중국문제 특성화
- ✓ 고급공무원(5급) 양성을 위한 '봉황인재학부' 파격 신설
- ✓ 후마니타스 장학금 등 교내외 장학금 대폭 증액

제12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협력과 배움으로
학교를
새롭게

폭력 사회, 폭력 학교에
갇힌 교육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 2013. 1. 15~1. 17

|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 제12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폭력 사회, 폭력 학교에 간한 교육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기획마당 운영 계획 1
● <참고자료1>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선 1 2
● <참고자료2>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선 2 9
● <참고자료3> 인권의 바람으로 학교폭력을 잠재울 제도와 교육, 어떻게 접근할까? 14
● <참고자료4> 인권의 바람으로 학교폭력을 잠재울 제도와 교육, 어떻게 접근할까? 32
● <참고자료5> 인권의 바람으로 학교폭력을 잠재울 제도와 교육, 어떻게 접근할까? 39
● <참고자료6> 인권의 바람으로 학교폭력을 잠재울 제도와 교육, 어떻게 접근할까? 42
●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너머 44

제12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폭력 사회, 폭력 학교에 간한 교육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기획마당 운영 계획

1. 방침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과 학교 폭력의 대안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
- 학교를 넘어서 인권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 모색
-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대 활동 제안

2. 일정계획

□ 1.16(수) 오후 사회 : 한날(박민진)

- 14:00~15:00 : 학교 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선 :
 - 학교 폭력=학생간 폭력? vs 학교 폭력=폭력의 교육 ?
 - 무엇이 학교를 폭력의 숙주로 만드는가?
 - 교육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들:
 - 강제 전학,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중심으로
- 15:00~16:00 : 인권의 바람으로 학교 폭력을 잠재울 제도와 교육,
무엇이 필요한가?
 -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의 변화방향, 학교 내 인권문제 담당 기구 등
 - 학교 문화와 학생을 변화시키는 인권교육의 방향과 제안점
- 16:00~17:30 : 종합토론

〈참고자료1〉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선

절망과 입시교육으로 본 학교 폭력

조영선(서울 경인고)

중2 학생들의 사회인식

청소년들이 삶에 만족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데는 학교 성적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0.8
그렇지 않다 8.1

매우 그렇다 58.9
경济력이 ‘상’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6.5
그렇지 않다 14.7

매우 그렇다 40.2
경济력이 ‘하’인 경우

<한겨레>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7월5~17일 전국 31개 중학교 2학년생 1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상·중·하’ 가운데 ‘상’이라고 답한 청소년(475명)의 79.5%(378명)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31.8% 포함)고 답했다. 반면 부모의 경제력을 ‘하’로 답한 청소년(299명)의 경우는 55.3%(165명)만이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12.3% 포함)을 했다.**

“나는 자살충동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8.3
경济력과 성적 모두 ‘상’인 경우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4.5
경济력과 성적 모두 ‘하’인 경우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인식 차이는 24.2%포인트에 달한 반면, 성적에 따른 차이는 13.5%포인트에 그쳤다. 성적이 ‘상’인 청소년은 77.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하’인 청소년은 그 비율이 64.1%였다. **잘사는 가정의 공부 못하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74.1%)가 가난한 가정의 공부 잘하는 청소년의 만족도(56.1%)보다 월씬 높았다.**

중2 77% “우리 사회는 불공정”…24% “자주 자살충동”

“내게도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2
경济력이 ‘상’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3.2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우리 사회가 대체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8%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도 35.0%나 됐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하’에 속한다고 답한 학생들 가운데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답한 경우는 19.0%에 그쳐, 다섯에 한 명꼴도 채 되지 않았다. 부모 경제력이 ‘상’인 아이들의 경우는 같은 대답이 24.6%였다.

한국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양극화에 따라 계층 이동의 기회가 예전보다 줄고 사회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우리학교는 양아치 학교래요, 누구 책임이죠?

고교선택제 그늘, 서울 최하위 고교에선

아이들은…

하위권은 다른 데 못 가서 오고

상위권은 다른 데 떨어져서 오고

주변에서 우리 학교 옥하면

나도 같은 취급 받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고교선택제·자사고 생기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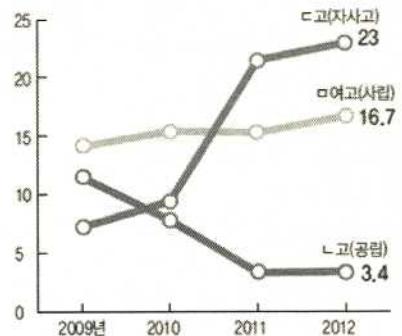
선호-비선호 학교 갈라져

수업 안되고 생활지도 안되고

신입생을 때마다 악순환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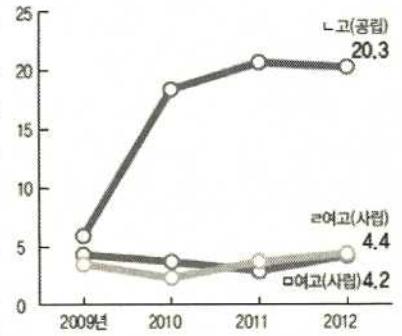
서울 ○○구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졸업 내신 상위 10% 현황

* 2011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단위: %)



중학교 졸업 내신 하위 10% 현황

* 자사고는 내신 상위 50%만 지원 가능



자료: 안인석 민주통합당 의원, 최종이 서울시 교육위원, 서울교육청

학생들의 반응을 전해들은 이 학교 교사는 “이 지역이 사립학교가 많고 강해서 공립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요. 또 공립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알려져서 동네에서 놀던 애들이 만만하다며 한번에 몰려와요. 고교선택제 전에 들어온 올해 졸업생만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했는데…” 학교 본관 현관에는 4월 초 열린 54명에 대한 선도위원회 징계 결과가 붙어 있었다. 출석정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주의경고 등 징계는 다양했다. 교사는 출연 징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 학교는 체육복을 훔치거나, 수학여행에서 사고를 쳤다는 이유로 신입생 10명을 한꺼번에 퇴학시키기도 했다. “보통 고등 학생이 되면 생활지도가 어렵지 않아요. 알 만큼 알 아이들이라서. 그런데 여긴 마치 중학생 지도하듯 하나부터 열까지 따라다니면서 지적하고 신경쓸 수밖에 없어요.”

교사는 “특목고, 자사고,マイ스터고, 선호 사립학교로 학생들이 빠지고 나면 최하위권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몰린다”며 “한부모·조손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 장기간 학습 소외를 겪어 꿈도 없고 공부할 의지도 없는 아이들이 몰리면서 공립학교가 슬럼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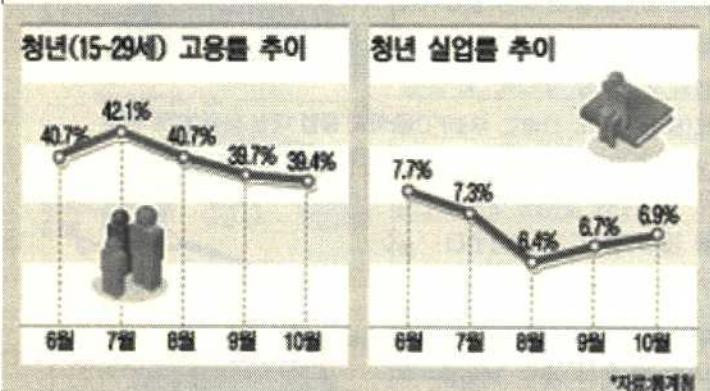
청년고용 '꽁꽁' … 고용률 석달째 추락

2012-11-14 오후 2:51:53 게재

실업 두달째 상승세 … 25~29세 고용률 2%p 내려앉아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찾는 25~29세의 고용률도 68.3%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엔 70.5%였다. 청년고용률은 1년전인 40.2%보다도 0.8%p나 낮은 상황이다. 25~29세 고용률 역시 70.3%에서 무려 2%p나 내려앉았다.

◆구직마저 포기 =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1.2%로 1년전에 비해 1.6%p 낮아졌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남성 20대가 2.5%p 하락한 60.9%를 기록했고 여성 20대도 0.8%p 하락, 61.5%를 보였다.



◆힘든 베이비부머세대 =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만 49~57세다. 50대 취업자가 1년전에 비해 23만명이나 늘었지만 인구가 29만4000명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0.2%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남성은 1.0%p 상승했지만 여성은 0.6%p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0.2%p 상승해 74.5%로 올라섰다.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50대 인구가 급증한데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탓이다. 따라서 50대 실업자는 10만6000명으로 1년만에 1만1000명 늘었고 실업률도 1.8%에서 1.9%로 0.1%p 상승했다.

◆60세이상에 쓸린 일자리 =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7%로 1년 전보다 0.9%p 뛰었다. 남성은 0.8%p, 여성은 1.0%p 상승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회복세 지연,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0대 후반의 취업자수, 고용률 등이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또 "향후에도 취업자 증가폭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1. '절망'과 '입시교육'을 학교 폭력의 키워드로 삼은 이유

요즘 아이들은 인생이 갈라지는 시점이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학원 레이스가 시작된다. 일제고사라는 시험이 생긴 후에는 '미달'이 되지 않기 위해 남아서 공부를 시킨다. 반에서 미달이 나오면 반 전체를 남긴다는 협박도 하기에 아이들은 '미달'인 친구를 미워하게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남보다 못 미치는 인생에 대한 굴욕감을 뱃속 깊이 새기게 된다.

하지만 굴욕감을 새기면서 노력해도 결국 상대 평가인 성적이 좋아질 리가 없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도태가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 보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되지 않고 노력의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되는 순간, 부모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부모와 대립이 시작하며 비슷한 또래들과 '놀기' 시작한다. 그렇게 부모와의 거리를 두면서 자기 또래들과 살길을 모색하지만 공부 안 하면 굶어 죽는다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더 가오를 잡고 센 척하려 한다. 근데 그러한 센 척에는 돈이 들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 돈을 벌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형성한 맥을 통해 뺏을 뜯거나 학교폭력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렇게 도태되지 않은 보통 중간의 아이들도 중학교에 가면 공부는 더 어려워지고, 그나마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와 학교의 기대에 부응했던 것은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며 자신은 그저 중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계다가 고교 입시가 다양해지면서 대부분의 학원은 특목고(특수 목적 고등학교, 과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등이 있다)나 자사고(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준비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 한다는 부모의 채근은 심해지고 스트레스도 커져만 간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중3이 되면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는 꿈을 가지라, 적성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하라 한다.

그런데 꿈에 대한 대우는 동등하지 않다. 외고나 자사고를 가서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은 칭찬 받지만 특성화고에 가서 싱어송라이터가 되겠다는 꿈은 지지받지 못한다. 결국 대학은 가야 하니까 특성화고에 가서 내신을 따는 게 쉬울까, 일반계고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쉬울까 주판알을 틁긴다.

중3 11월이 지나며 두 번째 도태가 일어난다. 특목고도 못 가고 특성화고도 못 간 학생들이 더 이상 입시가 자신이 어쩔 수 있는 리그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고3이 아니라 중3 때 말이다. 그래서 입시 공부와 더욱 더 멀어지고 비행의 강도도 세진다. 몇몇은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

이런 어영부영한 상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특목고나 자사고는 떨어졌지만 공부 못 하는 애들이 모인 인문계 학교에서 내신을 따겠다는 전략을 갖고 온 다섯 명 정도의

아이들과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에서 도태된, 실제 학력 수준은 거의 중2 이하인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다. 그런 가운데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특성에 따라 입시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습 결손이 심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시작한다. 의무 교육인 중학교 때까지는 떠들기라도 했지만 고등학교는 잘릴 수도 있으므로 그냥 자는 걸로 그 시간을 끘운다. 내신을 따서 대학을 가겠다는 다섯 명 정도의 아이들은 자신의 내신 성적을 반쳐주는 다른 아이들을 보며 열심히 필기를 한다.

그런데 요즘엔 입학사정관제다 뭐다 해서 공부만 할 수도 없다. 괜찮은 스펙이 될 만한 대회가 있는지 게시판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봉사활동이나 체험은 참가비가 있다. 참가했다가 상도 못하면 돈만 쓰는 꼴이다. 스펙이 되는 체험 활동이 무엇인지는 학원에서 잘 가르쳐주는데 내가 다니는 보습 학원은 아무래도 정보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내신이 나온다 해도 수능으로 최저 등급을 맞추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가기 어렵다. 만에 하나 들어간다 해도 취직이 어렵다니 마음이 무겁다. 저렇게 수업 시간에 자기만 하는 애들처럼 백수가 되면 진짜 억울할 것 같다.

그러다 어영부영 고3이 된다. 고3 3~4월에는 누구나 숨소리도 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 도태되었던 아이들도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거치면 사람들이 이름을 아는 대학에 죽어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전문대조차 2학년 때 내신이 좋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월간 작은 책 11월호 >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희망이다. 1950년 전쟁 이후 대부분의 계급이 제로섬이었던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계급 사다리의 '희망'이었다. 이 '희망'은 문맹률 0%라는 교육 열의 바탕이기도 했다. 어쨌든 출발선상의 평등을 바탕으로 앉아서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교육의 신화는 민주화와 함께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었고, 그 중산층은 입시를 통한 계급의 유지 내지는 계층 상승의 희망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이 중, 고생의 학부모가 된 지금 그러한 교육 희망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앞에 제시한 각종 지표들을 보면 사실 이러한 신화는 일상적으로 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화의 세대가 사회의 의사결정의 중요요직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육정책은 얼마나 평등한 입시정책을 만들것인가?, 부모의 계급이 성적을 결정하는 사교육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이 필요없는 학교 공부를 중심으로 대학입시정책이 짜여지고, 내신이 공정한 잣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신등급제를 실시하면서 학교에서의 평가는 상위권 학생들을 분별해내기 위한 문제를 꼭 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예전의 학생들이 모두 시험문제가 쉽기를 원했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문제가 쉬워지면 1등급이 안나올까봐 불안해한다. 80%이상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만 이제 부모의 세대처럼 대학에 나오는 것만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고

용시장에 의미있는 스펙이 되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한반에 1~2명에 불과하다. 결국 나머지 학생은 그 한 두명을 피워내기 위한 거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시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는 신화는 대다수의 학생에게 깨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한 두명에 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전쟁에 뛰어들어야하고 일상적으로 패배하면 낙오할 것이라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학생이 평소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성적을 매긴다는 내신은 '중간고사 한번 망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청춘에게는 실패할 특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한 순간이라도 한눈 팔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협박 아닌 협박을 10대 내내 경험하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공부를 못하면 취직을 못하고 굶어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뒤덮고 있다. 공포는 생각하는 힘을 마비시킨다. '이기는 것'이 '선'이되고, '패배하는 것'이 '악'이 된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공부'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다른 아이템을 찾게 된다. 하지만 다른 아이템은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교문 지도 때문에 멋있게 꾸며서 자신의 외모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나마 교문지도에서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은 시커먼 노스페이스이다. 하지만, 그냥 시커먼 잡바로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스페이스'라는 인장을 찾는다. 누구도 가치 있다고 해주지 않는 보잘것 없는 나를 비싼 '노스페이스'라는 갑옷으로 가지고 센 척을 한다. 애들한테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심부름도 시킨다. 자신감이 없던 내가 노폐를 입으면 용기가 더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어른들도 분수에 안맞는 명품과 외제차를 사는 것이다. 더 비싼 노폐를 입으면 나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노폐의 세계는 진화하고 그 안에서도 계급이 생긴다.

노스 패딩

600

겨울이 오면 모든 학생들이
노스 패딩을 입는다

왜 노스만 입을까

다른 패딩들도 많은데

노스는 비싼데 담배빵 당하면 터지는데

노스는 간지털, 비싼 노스 안에 내 몸을 숨기고
무엇이라도 둔듯하게 당당하게 거리를 걷는다
만 겨울엔 노스만 입어도 무서울 게 없다.



오늘의 교육, 7·8월호의 '언터처블 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 학생 편'을 보면 학교생활에서 유능감을 느낄 기회가 없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통해 자신의 유능감을 확인하고 존재감을 획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너희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

남 4 그냥 구경만 해요. 아니, 왕따를 구경한 아이들도 그러한 행동을 보고 따라 해요. 왕따를 시키는 걸 보고 따라 하면서 같이하게 되는 거죠.

여 3 저는 오빠들을 알게 되면서 다른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빠들이 빡이 되어 주니까 그냥 한 명을 여러 명이서깐 적도 있고 같이 놀아요. 돈도 뺏는데 돈 뺏긴 애들이 선생님한테 일러도 전 거의 선생님들한테 불려 간 적 없어요. 선생님도 저를 포기했거든요. 애들은 선생님들도 해결을 못 하니까 제가 힘이 무지 세구나 생각해서 더 무서워하죠.

여 4 저는 학교에서 언니들이 “어이 일루 와 봐” 불러서 갔더니 뛴다고 재수 없다고 때렸어요. 돈도 좀 빼앗겼어요. 언니들한테는 당하지만 ‘그래도 반에서는 제가 쌩이에요.

나 너희들이 학교폭력을 당해 봐서 그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알고 있을 텐데 왜 너희들도 똑같이 하는 거야?

남 4 당할 때는 기분 나쁘는데 누군가를 괴롭힐 땐 재미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애들이 움직이니까 내가 힘이 세 것 같고 애들이 복종하는 게 좋아요.

여 3 전 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하고 인기 없는 애들이 놀림당하는 거니까요. 기분 나쁘면 자기가 안 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애들도 제가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모욕을 주면 지지해 줘요. 애들 보면 제 편이 많아요. 제가 갈구고 왕따시키면 애들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의 교육, 7,8호 정용주>

즉 일진은 획일화된 입시교육과 이 시스템이 더 이상 뒷받침하지 못하는 ‘계급 사다리’로서의 교육 붕괴’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끊임없는 경쟁과 도태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만든다. 나도 배제당했으니 누군가 배제시킬 이유를 찾아 그를 배제시키는 데서 스스로의 정상성을 되찾는 것이다. 인정욕구가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적인 존중을 받지 못해 남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인정욕구를 채우려는 학생들이 초기에 억압적인 학교 규율을 무시함으로써- 파마 머리, 교복 줄이기, 야자 도망가기, 교사에게 대들기, 흡연-금기를 뛰어넘는 자로서의 권력을 갖는다. 이런 ‘센책’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표적을 찾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배제했던 권력에 도전했던 시작은 권력이 자신을 배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으로 끝난다. 학교폭력의 비극은 입시경쟁이라는 제도가 낳은 절망이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폭력성을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더 약자에게 행사한다는데 있다.

<참고자료2>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선 2

폭력과 차별을 용인하는 학교의 공식적·비공식적 신호

조영선(인권교육센터 ‘들’)

1.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신호

낯선 존재에게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인간의 당연한 성정이다. 이러한 성정이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2가지이다. 첫째는 각자의 다양성을 세세하게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낯설어보이는 것’(성별, 외모, 장애, 나이, 지역 등으로 인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클 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적 요소(빈부격차, 성적, 가족관계 등)들이 드러나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2가지가 이뤄지려면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차별과 폭력의 관행들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공간에서 훈련된 감수성이 비공식적 공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교는 여전히 ‘문제적 공간’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례라는 한계 때문에 학교별, 지역별 격차가 여전하다.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지만, 인권이라는 기준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환경 변화를 주동하는 힘이 될 것이다.

1) 개성표현의 권리 제약 -다양성 NO! 뛰면 안된다!



<온세상 사람들, 지식 다다익선 2009>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특징으로 지목되는 주요 이유중에 하나가 ‘튄다,

특이하게 생겼다, 잘난 것도 없이 나댄다, '는 것이다. 이것은 2가지 전제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된다', '특이하게 생겼다'의 의미이다. 뛰거나 특이하게 생겼다는 것은 대부분이 비슷하게 생겼을 때 가장 도드라진다. 다양한 민족 구성의 이주민으로 나라가 구성된 호주의 경우 저마다 다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누구를 특이하게 생겼다고 지목하기 어렵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한데다가 그나마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억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과 다른 외모나 행동, 의견을 말하면 도드라져보인다. 이런 현상은 '정상'이라는 기준에 못미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학생다운 머리와 옷차림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모델이 된 학생들은 그러한 정상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것에 모범생의 이미지를 덧씌워 그 이미지와 맞지 않는 학생들을 학교나 학생 모두가 가려내고 다르게 대접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잘난 것도 없이 나댄다'에 숨겨진 전제는 이러한 것이다. 첫째,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차별해야 한다. 아니 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잘난 사람은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것저것 오지랖 넓게 참견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서 제대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해도 짹소리도 못하고 사는데 심지어 모자라게 보이는 네가 잘나지 못한 사람 주제에 이것저것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제지의 대상이 된다.

2) 학생간 차별

① 성적 공개 및 차별 : 상대평가 시스템, 수준별 수업, 모의고사 성적계시, 공개성적확인 도덕 시간이나 윤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협력하고 배려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협력과 배려는 '너와 내가 다 부족하고 우리가 머리와 손발을 합쳐야만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공유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학생들 사회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갈갈이 찢겨있다. 영어, 수학의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시험때마다 5단계로 수준별 분반수업을 한다. 친구라는 동질성이 획득되려면 시간과 공간을 함께 보내고 같은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하루에 한번은 든 영어, 수학 시간에는 서로 다른 시·공간을 경험한다. 우리가 서로 친구지만 그 시간만큼은 수준이 다르게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공식적 시·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준별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수준에 맞게 배울 수 있어서라기 보다는 3반을 5반으로 나눴을 때 학급당 학생수 감소효과가 크다. 어떤 하반친구는 5수준의 교실에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보고 배울게 없다'는 한탄을 하기도 했다. 여러 수준의 학생을 모아놓는 것이 진도를 나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공식적인 배움의 시간은 진도를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식의 차이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배움을 나누는데 중점을 두고, 각자의 부족하거나 더 나아가고 싶은 것은 정규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본인이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또, '성적 계시'의 문화가 있다. 우선 수행평가점수와 서술형 점수는 개인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 전체에게 공개된다.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가 교실에서는 일상적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공개되면 자극받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도 돈을 벌기 어렵듯, 어느 순간 학습에서 손을 놓은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다시 손써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성취도를 확인하는 것이 결국 상대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력여부에 관계없이 늘 일정 비율의 학생은 패배자로 낙인찍힌다. 일상적으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은 '나는 저 정도밖에 안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패배감을 내면화하거나 '성적'이라는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는 태업을 하고(어차피 안될것이므로) 다른 재밋거리를 찾게 되고, '점수'로 점철된 학교의 질서를 공격하게 된다.

자신의 성적이 공개되는 문제 뿐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을 격려한다는 의미로 잘하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하거나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독서실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 역시 공식적인 차별의 신호가 된다. 공부를 잘하니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지식을 '권력'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에 대한 다음 사례는 '성적'이 '권력'화 된 것이 학생들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제 목 :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주라고 하는 학교

내 용 : 열흘 전 애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맞은 아이가 3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이고 엄마가 학교일을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과 친분도 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맨토 맨티 관계이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공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너는 커서 장가가지마라, 네 머리 닮은 아이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말을 하는 등 인격적으로 모역을 주며 폭력적인 말들과 교과서에 남녀성기를 그리고 '섹스하고 싶다'는 말을 쓰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증거가 있다. 피해학생이 계속 당하기만 하다가 옥하는 마음이 들어 맞장을 뜨자고 했는데 가해자가 친구 네 명을 데리고 상가 옥상에서 와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

사건 조사 첫날은 강제전학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다음날은 생활지도부실에서 담임에게 너무 강하게 다루지 말라는 압력을 주었다고 한다. 자치위원회 전날은 피해자 측에 합의서를 요구하면서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에 진학할 아이인데 이 사건으로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며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합의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합의를 거부하자 쌍방이 처벌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진단서도 2주로 끊어달라고 사정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학폭위가 열렸는데 생활지도부 교사가 편파적으로 밀어붙이며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가벼운 처벌을 내릴 것을 종용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학부모위원들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교사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내봉사 4일의 가벼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 위원들은 선생님의 처사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학교 학부모들도 다른 사건에서 사소하게 밀기만 해도 사회봉사 4일이 나왔는데 너무하다는 여론이 있다. 피해학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기를 못 펴며 이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옆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던 제 3자 인데도 학교의 처사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다. 이전일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사례>

②선도부의 존재 : 역시 학생들간의 관계를 가르는 공식적 신호이다. 지금까지 선도부는 주로 교문지도에서 교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다. 교문지도를 불합리하게 여기는 학생들은 교문지도의 존재 자체에 억압을 느끼면서 그 역할을 학생이 함께 한다는데 반감을 느낀다. 또 반대로는 선도부로 생긴 작은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실제 어떤 학교에서 선도부인 학생이 매점에서 간식 등을 얻어먹고 학생의 별점을 지워준 적도 있었다.

3) 교사와 학생의 복지 환경의 차별

:교무실과 교실의 냉·난방 차별, 화장실의 청결도, 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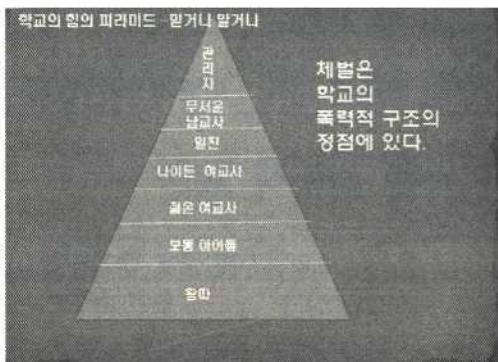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분노하는 것이 교무실과 교실의 냉난방 차별이다. 수업시간이야 선생님이니까 더 권한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환경의 복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학생들표현에 따르면)'인간적으로 빠치는 일'이다. 학생들은 더 나은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그 공간을 몰래 들어가거나 교무실 또는 교사용 화장실에 뭔가 용무가 있어 들어간 척 연기를 하게 된다. 어쨌든 권리를 누리는 것을 부당한 방법을 통해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배가 된다. 이것은 나보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위안받는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러한 감정을 뒷받침하게 해주는 존재가 '왕따'인 것이다.

4)반강제적 모금, 봉사활동, 심부름(교무실 청소), 자의적인 체벌과 벌점

최초의 사회생활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존중받는 개인이 아닌 학생이 된다. 학생이라는 역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은 무시되고 때로는 존엄함조차 포기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다.

학생은 미래의 국민을 키워내는 것이고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이 되기 위해 개인이 회생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는 전통적으로 이유없이 걷는 것이 많았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방위성금도 걷고, 주기적으로 폐휴지도 걷었다. IMF가 왔을 땐 금모으기도 했고, 겨울이 되면 국군장병을 위한 성금도 걷고, 아직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이렇게 돈을 걷을 때 걸으로는 학생들의 동의를 받는 척 한다. 하지만, 안가져오면 암묵적인 왕따가 따른다. 돈을 회장, 부회장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걷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자기만의 영역, 사생활의 영역이 없기에 소지품 검사나 압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도난, 폭력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일상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소지품 검사를 하는 있었다. 그리고, 위험 물품이라고 교사가 판단하면 즉시 압수할 수 있었다. 실제 휴대폰은 지금도 대부분 학교에서 발견



즉시 압수 대상이다. 즉 타인의 물품에 대해 동의없이 압수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는 사랑의 매가 있다.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 말로 해도 듣지 않을 땐, 즉 맞을 짓을 했을 때는 맞아야한다. 그리고 신체를 가학하는 것이 때로는 재미의 일부일 때도 있다. 실제 체벌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맞는 학생들이 체벌 때문에 얼굴이 뺏

개지거나 일그러지는 표정을 보면서 웃는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야단치기 위해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툭툭치거나 하는 신체적인 접촉이 일상적이다. 본인이 원하는 원하지 않는 이러한 접촉에 대해서 화를 내면 쪼잔한 인간이 된다.

그리고, 바쁜 선생님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의 심부름이 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남학생 몇 번부터 몇 번 까지 차출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관행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미덕이다. 여기서 존중받아야 할 개인은 없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가해자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 금품갈취는 한 학생들은 돈을 빌렸다고 한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못갚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폭행을 했을 경우 피해자가 맞을 짓을 하거나 장난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심부름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 역시 자신의 동의없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행동의 폭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 피해자 학생도 처음엔 어느 것이 선의에 의해 빌려주는 것이고, 어느 것이 갈취인지,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부터 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한다. 실제 학교 폭력을 다룬 CNN과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은 처음엔 이것이 학교폭력인지 몰랐다는 말을 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도움이 필요하다니 심부름을 했던 선의가 셔틀로 이어질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인 장난이 어느 시점에서 장난에서 학교 폭력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장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뭔가 쪼잔해보이는 느낌을 준다.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한채 상황속에서의 괴로움은 커지고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게 되면서 피해자는 걸잡을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가해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친구가 없는 학생인 경우가 많다. 매점에서 뭔가를 사달라고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 조차도 관심으로 받아들이다가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면 더 큰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그나마 무리 속에 섞여지냈던 삶이 무너질까봐 폭력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그 누구도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한다. 학교 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 문화가 어떤 사고 방식을 낳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3〉인권의 바람으로 학교폭력을 잠재울 제도와 교육, 어떻게 접근할까?

학생인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제안

강영구(전교조 상근변호사)

1.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체벌금지, 두발규제금지 등 금지되는 학생인권 침해행위의 명시 및 학생인권 침해시 구제절차 마련

2008년 촛불집회 당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외친 주요한 구호는 “잠좀자자, 밥좀먹자” 였다. 0교시, 강제보충학습, 두발규제 등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학생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은 비단 배움의 권리만이 아니며, 사실상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에 2006. 3.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체벌금지, 강제보충학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이후 국회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모두 빠진 채, 2007. 12.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조항(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만이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동 조항은 그 추상성으로 인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웠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 4. 15.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지침을 폐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지침’ 목록에는 0교시수업, 야간보충수업, 사설기관 모의고사 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였던 최소한의 지침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종래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던 0교시수업, 야간보충수업 등은 이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학교 안에는 학생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사라지게 된다.

☞ 이에 개정안은 ▲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다시금 확인함과 동시에 조례로써 이를 구체화하도록 하였으며(안 제17조의4), ▲ 체벌, 두발규제, 강

제보충학습 등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금지되는 인권 침해행위를 명시하였다(안 제17조의5).

▲ 또한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여금 학생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11).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7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5(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하여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3.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가정환경, 성적(成績),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신념, 성적(性的)지향,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단,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5. 보충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6.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 없이 야간에 학교에서 학생으로 하여금 보충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7조의10(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

- 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의11 (학생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치)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 그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학생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생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학생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해자,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 침해의 중지
2. 학생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학생회 및 학생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학칙 제·개정에 참여

학생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지만, 현재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학생들은 바로 자신의 머리길이와 복장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학생회는 명목상 자치활동이지만 실제

로는 학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학생은 교육의 일차적 주체이지만, 학생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는 시혜적으로만 주어질 뿐이다¹⁾.

이에 관해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학생은 미성숙하므로 자신의 이익에 대하여 결정하고 옹호할 수 없으며, 학생의 권리는 어른을 통하여 행사되면 충분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숙은 생물학적 나이가 되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이 스스로 일을 꾸려가고 책임지는 경험 없이 민주시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이에 개정안은 ▲ 학생 언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를 금지하고(안 제17조), ▲ 학생회가 두발, 복장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의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축제나 학생회행사의 예산과 같은 학생자치영역뿐만 아니라 그 밖에 학생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안 제17조의2). ▲ 나아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총회(=학생총투표)를 열어 학생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7조의3). ▲ 그리고 이와 같이 학생회를 통하여 수렴된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31조).

제17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학교는 동아리, 소모임, 언론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학생회)

① 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8.]

외국의 경우 학교의사결정기구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법제도상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입법례들이 많다. 독일의 경우, 각 학교의 학교협의회는 물론 란트의 학교위원회에도 학생대표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에까지 학생이 학부모나 지역행정기관 및 지역인사 대표와 동수로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신현직, 2000

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징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선출
2.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3.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
4.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안 발의
5. 건강·안전 등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6.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총학생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총학생회는 회의결과와 예·결산자료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총학생회와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3(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 ① 학생총회는 학생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생총회는 학년별, 학급별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학생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학생총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⑤ 정기총회는 학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총학생회의 의결 또는 학생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총학생회 임원의 선출 및 탄핵
2.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제·개정안
3. 총학생회의 의결로 학생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학생 10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여 부의한 사항

4.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사항

5. 기타 학칙으로 명시하는 사항

⑦ 학생총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⑧ 그 밖에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생략

특히 현재 학생을 통제하는 가장 큰 수단은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선도규정이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학칙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욱이 2012. 3. 21. 자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삭제되고, 2012. 4. 20.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함과 동시에²⁾ 경기, 광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의 두발규제금지 조항 등에 대하여 ‘실효’를 선언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학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특히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총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임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 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삭제 <2005.1.29>
- 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권을 침해하는 것일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장이 학칙에 대하여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 침해적인 학칙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8조).

제1장 총칙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학칙의 제·개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2. 학칙의 내용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⑤ 학칙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정계법정주의와 적법절차 보장

법치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그 법률은 제한하고자 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³⁾. 학생의 기본권 제한이 학교장과 학칙에 백지위임되어 있는 셈이다.

3)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의 지시사항과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품행이 둠시 불량한 학생",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유포한 학생", "교사에게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허가 없이 단체나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등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징계사유로 정하여져 있다. 또한 징계의 수위 역시 "흡연 3회시 퇴학", "흡연 2회시 퇴학" 등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⁴⁾.

특히 최근 많은 학교에서 체벌을 대체하여 '상벌점제(행위별로 벌점을 부과한 후 일정 벌점이 누적되면 징계를 하는 방식)'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해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벌점 누적으로 인한 학생 전학 및 퇴학 등에 관한 교육적 효과 평가' 조사 의뢰 결과에 따르면, 벌점제로 인한 퇴학이 폭력으로 인한 퇴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증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4) 아래는 서울 M고등학교의 학생선도규정의 일부이다.

제 12 조【징계 기준】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포괄기준 : 단, 가정학습 처분은 퇴학 처분의 기준에 준한다.

구분	항목	위반 행위 내용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
준법	1	학교의 지시사항과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교권을 고의로 심대하게 모독한 학생(욕설, 폭언, 폭력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공공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학교 계시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경찰서나 사법기관의 지도를 받아가 훈방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형법상 유죄를 받은 학생				<input type="radio"/>
	7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품행이 둠시 불량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예결	9	교사에게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용의 복장이 바르지 못한 학생	<input type="radio"/>			
	11	언행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2011. 9. 30. 메디컬투데이, "학생 벌점제로 인한 퇴학 28건, 벌점 한계 드러나"

또한 현재 학교에서 학생과 학교 그리고 교사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맺게 되므로, 학생들에게는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절차가 마련되어 엄격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경환(1990)은 학생징계의 기본적 절차로 통지, 청문, 공평한 심판기관, 불복절차 등을 들고 있다, 먼저 '통지'는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를 학생에게 알려주고, 징계대상이 된 학생에게는 징계절차를 통지하는 것이다. '청문'은 징계대상이 된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심판기관'은 공평해야 하고, 그 구성원은 징계절차에 숙련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불복절차'는 우선 학교측의 상급기관에 불복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사를 받는 과정이다. 이런 기본적 절차가 지켜질 때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 이에 개정안은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 징계사유를 한정하고,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하기 전 상담기관과의 연계 등 교육적인 선도 방법을 우선 강구하도록 하며, 특히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는 학생의 동의 하에 교육감에게 다른 학교 또는 대안교육위탁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알선을 요청하도록 하여 퇴학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정되도록 하였다(안 제18조). ▲ 또한 학생선도위원회는 교원,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학생·보호자는 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만약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안 제18조의2). ▲ 또한 현재 ‘퇴학처분’으로 한정된 재심청구절차를 ‘모든 징계처분’으로 확대하여 학생이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소송 이전에 상급기관에 불복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8조의3).

제18조(학생의 징계 등)

① 학교의 장은 그 소속 학생이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한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하기 전에 상담기관과의 연계 등 교육적인 선도 방법을 우선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제4호의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교육감에게 다른 학교 또는 대안교육위탁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알선을 요청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알선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학생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퇴학처분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⑤ 교육감은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
2. 대안위탁학교의 설립
3. 제1항제3호의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4. 학생의 선도 및 치유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제18조의2(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도위원회는 교원,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선도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선도위원회의 구성·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8조의3(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4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4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업무 정상화 등 교육여건 개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의 학습 환경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0년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의 경우 21.6명, 중등의 경우 23.9명인데 반하여, 한국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의 경우 30명, 중등의 경우 35.3명이다. 2010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급당 정원이 36명을 넘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 학급 수는 중학교 28,142개, 일반계고등학교 25,493개, 초등학교 3,958개, 전문계고등학교 2,307개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는 학교사무직원(관리직원, 전문직원, 교사보조, 기타)의 비율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사의 직무영역에서 교육과정 및 수업, 학생평가, 생활교육 외의 행정업무는 미미한 수준이고, 보조행정인력을 통하여 행정적인 사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교사 대비 행정·사무직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밀학급, 과도한 행정업무 속에서 교사가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사교육, 선행학습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는 어떤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또한 교실에는 특별한 배려를 요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명의 교사가 이를 배려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이에 개정안은 교과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규정이 시행되는 해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초등의 경우 20명, 중고등학교의 경우 25명 이하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안 제19조 제5항)6), ▲ 행정사무직원을 확충함으로써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5. 17. 아래와 같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의 거센 반발로 실제 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51조를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의 학급수를 정할 때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다만,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9. 26. 아래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9조 제2항, 제21조의2). ▲ 또한 정서적 요인, 가정환경, 빈곤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사가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생에 맞는 개별지원교육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제28조).

제19조(교직원의 구분)

-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무행정, 일반행정, 전산사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각각의 직원을 둔다.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이 규정이 시행되는 해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 : 20명 이하
 2. 중고등학교 : 25명 이하

제21조의2(교원의 업무)

- 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편성, 수업, 평가 등 교과교육
 2. 상담 등 생활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 교장·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 교사를 더 둔다.
-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④ 중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명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11.23>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6학급 이상 8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3명
3.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5명 이내
4.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5.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11명 이내
6. 2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명

⑤ 중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2005.9.29, 2008.2.29, 2011.9.6>

- ⑥ 삭제 <2010.6.29>

⑦ 제33조제5항의 규정은 중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교육활동과 관련한 연수 및 연구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에 따른 행정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소속 상관이 근무시간 외 또는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개별지원교육)

① 교사는 정서적 요인, 가정환경, 빈곤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개별지원교육”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원의 추가 배치

2. 수업 내 또는 수업과 병행한 개인별 지도

3.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4.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제공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별지원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지원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보건 및 정신건강 부문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 학생복지지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개별지원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권 및 평가권 보장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은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춘 자격있는 교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교원의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선택·결정권으로서, 교원의 교육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의 작성·선택의 자유, 교수방법과 내용의 선택·결정의 자유, 성적평가권, 생활지도권, 징계권 등을 들 수 있다⁷⁾.

그러나 현재 교사는 국가로부터 이미 가르칠 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선택부터 평가내용에 대해서까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교사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진도에 맞추어 평가 대비 수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이 획일적인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쉽게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

※ 이에 개정안은 ▲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명시하고(안 제20조), ▲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함으로써 교원이 교무와 수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의 및 의

7) 법제처, 교육기본법 해설서. 2011. 9.

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30조의9).▲ 또한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교사들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법제화하였다(제30조의10).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을 평가한다.

제30조의9(교무회의)

① 학교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를 운영한다.

②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안

2.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안

3. 평가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내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인사규정 등 교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③ 교무회의는 교원으로 구성하며, 교무회의의 의장은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④ 교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교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⑥ 학교에는 학년별, 교과별 교사협의회를 두고, 각 학년과 교과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년별, 교과별로 구성된 교사협의회에서 결정한 후 교무회의에 보고한다.

⑦ 교무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년별, 교과별 교사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교원인사위원회)

① 공정한 교원 인사를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내부 인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정원감축에 따른 교원전보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포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사항

③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은 교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의 선출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원인사의 원칙 및 인사위원회 운영은 학내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다. 분쟁조정제도

한국교총이 발표한 '2011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2011년 접수, 처리된 교권침해사건은 10건 중 4건이 학생,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이고, 그 다음이 '학교안전 사고로 인한 학교, 교원에 대한 치료비 요구 및 구상권 청구'였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학부모가 학교나 개별 교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한 후 이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상황에서 그 배상책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 역시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모두 적절한 보상, 배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된 성격이 짙다. 따라서 처음부터 학교안전망이 완비되어 있었더라면 사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을 사안들이며, 그런 점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편, 교육당사자간 분쟁은 초기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더라면 해결될 수 있었을 사안임에도 그러한 과정을 가지지 못하여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려 해도 학교나 교육청에 이를 상담하고 처리해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결과 학교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외부 언론에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은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그 설치가 임의적이고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⁸⁾.

☞ 이에 개정안은 ▲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그 산하의 학교교육고충상담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교육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 등은 우선 고충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국가배상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한 후 학교장에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

8)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급 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안 제35조, 제35조의2). ▲ 시도교육청에 같은 기능을 가진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그 산하의 시도교육고충상담센터를 두도록 하였다. 특히 시도교육고충상담센터에는 전담변호사 등 법률지원단을 두고 교원과 학부모에게 적절한 법률상담과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36조, 제36조의2)⁹⁾.

제3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 ①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갈등조정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③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고,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당사자가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제9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피해당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 피해당사자에 대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3.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
 - 4. 사안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발
 - 5. 사안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정정 또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6. 사안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신청
 - 7. 사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제10조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
 - 8.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9.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피해당사자가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당사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

9)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근이나 결석은 공가나 공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고충상담센터의 법률지원단에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5조의2(학교교육고충상담실)

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교교육고충상담실(이하 "고충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교교육고충상담실은 교감을 실장으로 하고, 해당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교육고충상담실을 통하여 상담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교교육고충상담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6조(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① 제35조에 따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교육감에게 조정 신청한 사안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원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갈등 조정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학교의 장"은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6조의2(시도교육고충상담센터)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시도교육고충상담센터(이하 "고충상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교육고충상담센터는 센터장 1명과 전담변호사, 현장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약간 명을 둔다.

③ 시도교육고충상담센터는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시도교육고충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충상담 및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신청 접수

분쟁사안에 대한 조사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학교교육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시도교육분쟁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3. 결론에 갈음하여

여전히 일부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은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래 학생의 글은 뉴질랜드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바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존중하였기에 아이들도 선생님을 존중하였고, 그렇게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였기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존중하였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이유가 그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채택되고 교육감이 바뀌면서 최근 학생 인권 수준이 예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일단 체벌이 금지되고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학생 인권 보장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중학교 과정을 뉴질랜드에서 마친 학생으로서 설명해 나가겠다."

먼저 뉴질랜드의 학교는 한국의 학교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커리큘럼이나 학년제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오래전부터 학생들에게 체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이 심한 사고를 치자 선생님이 "이 녀석들 오면 엉덩이를 때려줄 테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반 아이들 모두가 충격을 먹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을 하면 바로 구속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체벌이란 제도를 전수해준 일본조차 폐지한 체벌 제도를 겨우 작년에 폐지했는데, 그런 면에서 참 선진국답지 못한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면서 교권이 크게 추락할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폭력으로 아이들을 규제하고 제압하던 기준의 행위를 더는 할 수 없기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뉴질랜드에서 생활했을 때 선생님이 아이들을 존중하였기에 아이들도 선생님을 존중하였다. 체벌도 없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육조차 할 수 없는 체제 속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이 점이 바로 체벌로만 아이들을 규제하려 했던 한국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체벌 이외의 상담이나 반성문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뉴질랜드 선생님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그곳의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훨씬 암전하고 무난했다. 내가 있던 반만 보더라도 결손가정, 빈민가 아이들, 심지어 마약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교육 신념이 달랐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과 선생님의 빈번한 갈등이 뉴질랜드에서는 소수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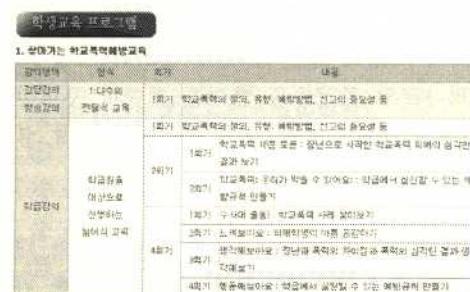
- K고 정00

<참고자료4> 인권의 바람으로 학교폭력을 잠재울 제도와 교육, 어떻게 접근할까?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들여다보기'를 통한 인권교육에 대한 제언

조영선(인권교육센터 '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들 중 가장 양적인 팽창을 이룬 것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다. 어느 단위가 내는 대책이든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어쨌든 교육이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돈이 덜 드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1 학부모에게는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학부모들을 위해선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강좌가 학기별로 열리고 있다. 교사, 학생들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 학기에 한 번씩 받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지침이 바뀔 때마다 교사에게 안내 자료가 내려오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공유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참으로 방대한 양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안내

맺어 2007년 5월부터 학교폭력 SOS지원단이라는 학교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해 온 곳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학교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자료와 강사를 지원해 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핵심은 피해자의 고통을 알려 주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안내한 후, '너희가 하는 장난도 다 폭력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며 그에 따라 법적인 징계가 마련되어 있으니, 장난으로라도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는 것이다.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봐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진행하는 예방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사례별로 이 행동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를 알려 주는 식이다. 아래는 교과부에서 이번 7월에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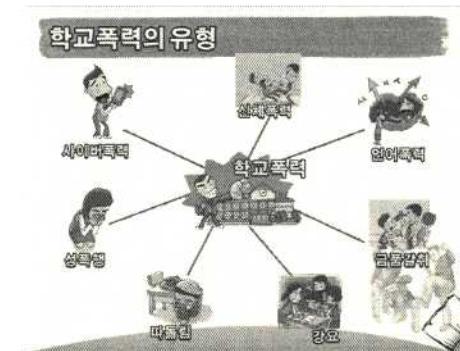
한 중·고등학생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균질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살펴본 것이다.

1단계 : 피해자의 고통을 말해 주기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로 시작하는 자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 주기 위해 지난해 겨울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유서와 가해 학생들이 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여 준다. 이어서 학습 목표가 나온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학교폭력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임을 안다. 2. 방관자도 곧 가해자임을 알고 더 이상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방법을 알고, 적절히 행동한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알고 학생들이 이에 공감하는 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후 제시되는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 여기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곧 학생들 자신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학교가 '일상의 공간'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고통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특히 드러난 '행위'만으로 학교폭력을 설명할 때, 학생들은 제시되는 사례들을 보며 "우리 학교에는 저 정도 일까진 없는데요?", "우리 학교는 저 정도로 심하지 않은데" 하는 반응을 보이기 쉽다. 더군다나 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동반한 '범죄'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자신의 문제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하며 '방관자도 곧 가해자'라는 메시지를 무작정 학생들에게 던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다. 학생들이 눈앞의 폭력을 보고도 나서지 않은/못한 데는 여러 복잡한 맥락이 얹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방관과 관조의 태도를 깨고 사건에 개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참여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차단당한 채 살아왔던 걸 생각해 보면, '방관한 너희도 잘못'이라는 어른들의 손가락질이 무책임하게까지 느껴진다. 결국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의도하지 않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난 왜 그 순간에 방관할 수밖에 없었는가)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도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 내 책임이 아니야'라고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평소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에게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은 폭력적이다. 사례 속의 피해자들은 늘 다른 사람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인 '무력하고 불쌍한(찌질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제시되는 사례들에선 'A가 B에게 빵셔틀을 시켰다'는 식의 '행위'와 함께 그 행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만 제시될 뿐, 괴롭힘의 이유들 - 키가 작거나 친구가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을 소개한 뒤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설명한다.

없거나 나댄다는 것 - 이 전혀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폭력을 발생시킨 차별과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라진 예방 교육은 피해자가 놓여 있는 견고한 차별의 구조는 전혀 흔들지 않은 채 '(애가 좀 이상해도) 폭력은 쓰지 말라'는 이상한 메시지로 둔갑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자연히 피해 학생도 자신이 당하는 차별과 폭력의 부당함에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른 이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인식하게 된다.

2단계 : 학교폭력의 정의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려 주기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례 #7

Q1 A학생이 B학생에게 한 행동은 어떤 범죄?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례 #7

이런 경우엔 #7

- A학생과 경신지체장애를 가진 B학생은 같은 반 학생
- A학생은 B학생에게 자주 욕설과 함께 "바보, 돌대가리" 등으로 불린다
- A학생은 B학생과 다른 학생들을 스마트폰 채팅방으로 끌러 모아에게 욕설과 함께 비방하는 글을 남긴다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례 #1

Q1 한 주먹이 나설신을 때린 행위는 어떤 범죄?

한주먹이 때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

Q2 나침신이 맞아서 상처나 나거나 헌통안 기절했다면?

상처가 나는 것과 기절하는 것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 폭행과는 달리 양하게 치법함

흔히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다. 우선 지식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배경에는 학생들이 그것이 폭력인지 '몰라서' 저지른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 '네가 장난으로 한 행동이 상대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이런 맥락에서 강조된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후 "몰랐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그 행위가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인지 몰랐다는 뜻일까? 사람은 누군가를 괴롭힐 때 어떤 행동이 상대를 괴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신호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고통

의 신호가 괴롭힘을 주는 당사자에게 폐감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이 나에게 폐감이 되는 때는 자신도 고통을 겪었을 때이거나, 그 괴롭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이다. 자신이 받은 공격을 공격한 대상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일 때 많은 이들이 영뚱한 대상에게 분노를 풀면서 자신의 고통을 위로받으려 한다.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 학생들은 교사든, 학부모든, 같은 학생이든 자신보다 힘이 세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당한 공격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사과를 받아 내지 못한다. 이로 인해 받은 상처는 자신이 힘의 피라미드 가장 하위의 계층이라는 굴욕감으로 마음의 언저리 어딘가에 남고, 그것이 어느 순간 누군가를 괴롭힘으로써 자신이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있지 않단 걸 확인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욕구는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더 약한 대상을 향해 간다. 물론 그 괴롭힘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 정의에서 열거되지 않은 행동으로도 표현된다. 자리에 겸을 붙인다든지, 약점을 가지고 놀린다든지, 프린트를 넘길 때 그 친구만 빼고 돌린다든지. 따라서 학교폭력의 정의에 열거된 행위들과 그것이 어떤 법의 처벌을 받는지 아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법망을 피해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도만 늘어날 수 있다. 법적인 제재를 통한 행위의 억제가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단계 : 폭력을 당할 경우 신고하라고 알려 주기

학교폭력에서 벗어나기 1

적극적 의사표시

서울 S고 박OO 학생은 중학교 때 꼼꼼하고 썩싹하여 선생님의 충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다. 부모님, 선생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직접 교육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한계가 있었다.

A학생은 적극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너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학교폭력에서 벗어나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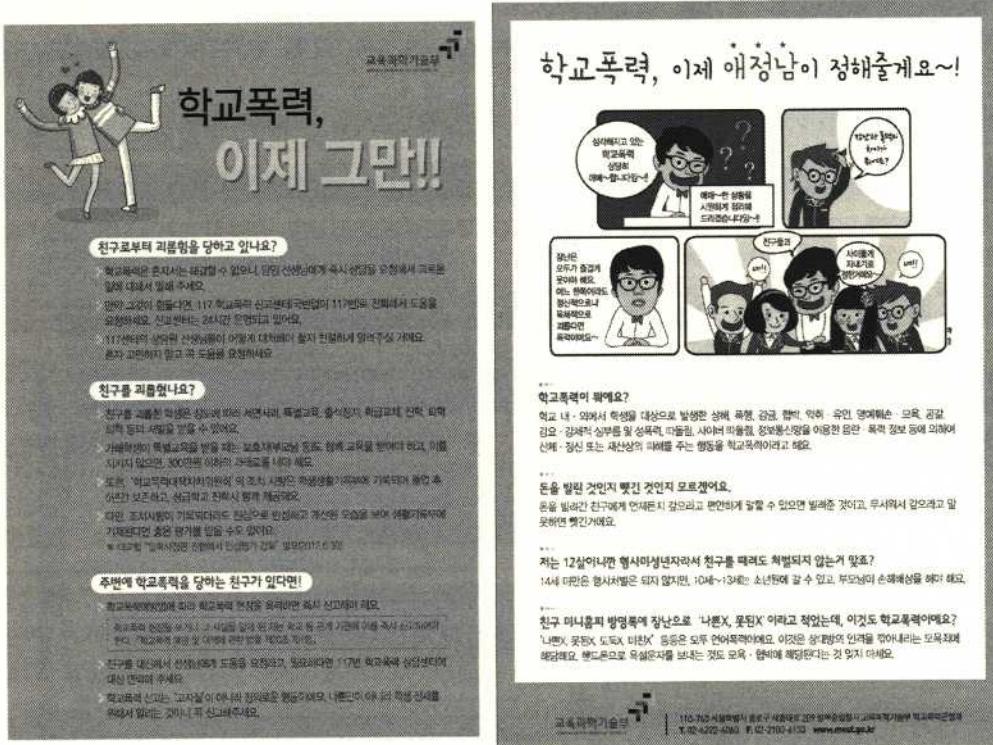
부모님, 선생님께 말하기 힘든 경우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신고는 고초뿐 아니라 나의 권리다)

나를 괴롭힌 친구가 괴롭힐 수 없도록
증거를 확보하세요

"너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나를 괴롭힌 친구가 괴롭힐 수 없도록 증거를 확보하세요." 학교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중 '적극적 의사 표시'와 '신고하기' 부분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복잡한 그물망에 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알려 주는 대처 방법은 너무 단순하다.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세요." "부모님, 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상담하세요." 그

리고 마지막. “신고하세요. 국번 없이 117 누르세요.” 학생들이 몰라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어른들에게 상담을 하지 않는 게 아니란 건 누구나 잘 알 테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오히려 왜 그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었는지, 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겐 말할 수 없었는지를 학생들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선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자각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예방 교육엔 그런 과정이 빠져 있다. ‘신고’의 경우, 물론 신고가 필요할 때가 있고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신고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안전망이 될 수도 있지만, 신고만 남게 되면 더 큰 무력감이 덮칠지도 모른다. 신고를 통해 당장의 1차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순 있겠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 이후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폭력을 범죄화하면서 신고와 사법 권력을 통해 풀어 가려는 발상은 위험하다. 진정 학생들 안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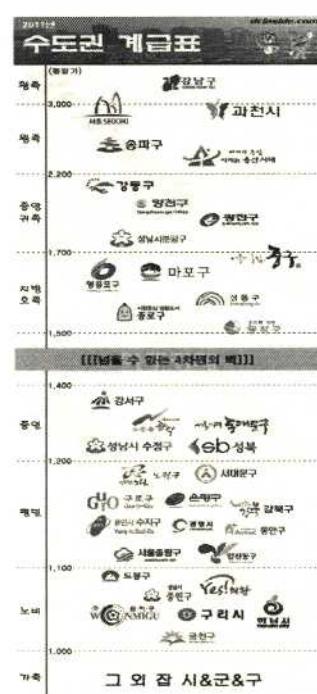
자신의 ‘힘’을 성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가해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이며 그것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다는 욕구의 근원이 되는 나의 상처를 알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내가 지금 복수하는 대상이 사실은 나를 공격한 대상이 아니었고, 자기가 힘 있는 자로부터 받은 상처를 힘없는 자한테 풀고 있다는

사실 즉,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상처가 묵혀지면서 화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힘 있는 자가 나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과를 요구하고 자신의 훼손된 자존심을 복구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힘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연습이 이루어질 때,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존재감을 얻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차별 구조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힘’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도처에 힘이 흐르고 있다. 그 힘은 신체적·물리적 폭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 때로는 외모, 때로는 인맥, 성별, 종교, 사상, 장애, 여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많은 부분들을 통해 ‘권력’을 구성해 나타나기도 한다. 그 ‘힘’은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계급표를 만들어 낸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주류에 가까울 때, 즉 소위 엄친아, 엄친딸은 굳이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힘을 갖는다. 하지만 세상에서 인정하는 주류와 거리가 있는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를 구성하게 되고, 슬프게도 이것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애들 말로 하면 못사는 애들이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며 성격도 나쁘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엄친아와 엄친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처의 근거가 된다. 문제는 이런 존재들에 대한 사회적 대접까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차별을 근거로 구성되는 계급표를 뛰어넘는 교육이 없이는 학교폭력 예방은



인터넷에 떠도는 수도권 계급표

이루어질 수 없다. 계급표를 뛰어넘는 교육의 첫 번째는 엄친아와 엄친딸이 정말 그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난 사람으로 만든 기준 자체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흔히 객관적으로 정당화하는 차별의 근거들 - 가난한 사람은 계을러서 가난한 거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백인종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 - 이 역사적으로 지배층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차별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못나서 차별을 겪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났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를 그저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힘이 생길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계급표의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힘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기득권자들에 의해 조작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신의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을 다시금 돌아보게 될 것이다.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결정적으로 빠진 부분이 바로

이거다.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진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차별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힘의 관계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앞에서도 말했듯 차별과 폭력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구조는 손끝 하나 건들지 않는다. 단지 폭력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고 범죄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말하거나 신고해야 할 것이 된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에겐 정말 필요한 예방 교육은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이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도 줄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에 대해서 위축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나아가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힘을 그대로 놔둘 때 그 힘이 자신에게도 고통이 될 거라는 걸 깨닫고, 타인의 고통에 기꺼이 오지랖 넓게 끼어들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인간, 까칠하고,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이 있고 오지랖넓은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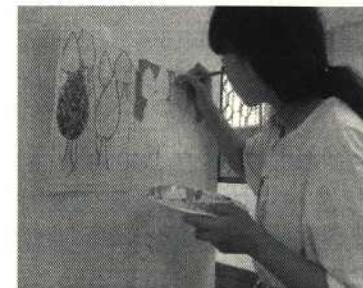
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육을 상상한다. 하지만 실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자신의 받은 모욕에 대해 참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배우고,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은 모욕당하지 않아야하는 인간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지니며, 모욕을 약자에게 되갚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만드는 사회구조에 대해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에 맞설 수 있는 있어야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즉 모욕을 받아도 침묵하던 사람들이 입을 여는 순간, 그 침묵을 평화라고 느끼던 사람들은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면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이 학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모욕감을 정당하게 표현하고 그것이 수용될 수 있을 때, 폭력의 정도가 심화되기 전에 폭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갈등 발생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때 약자를 제물삼아 훼손된 자신감을 세우는 행동을 멈추고 타자의 인권존중에 동참하게 된다.

누구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 공감하는 힘을 멈추게 하는 것은 권력이다. 결국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폭력을 강요하는 권위에 대항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인가를 인지하고 그 차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권력의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폭력을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하지마’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권위에 눌려 인간다운 삶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권력에 맞서는 교육’이어야 하며, ‘세상의 차별에 저항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저항하는 힘을 만드는 ‘연대의 교육’이어야 한다.

<참고자료5> 인권의 바람으로 학교폭력을 잠재울 제도와 교육, 어떻게 접근할까?

학교폭력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부적응이다.

영림중(이명남)



어제 오후 차창 밖으로 보았던 나비가 생각난다. 악착같이 바람을 거슬러서 위태로운 비행을 하던 작은 나비. 그때 난 왜 그것이 방향을 거슬러 가려 한다고 생각했을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

어느덧 1년이 지나갔다.

우연찮게 꿈도 꾸지 않던 생활지도부에서 지내며 우선 부적응 학생에 대처하는 이전의 방법이 주로 징계나 처벌로 문제 행동의 발생을 막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부적응 학생의 행동의 결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응 행동을 일으킨 원인인 마음의 상처나 분노에 주목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태도를 바로잡아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돋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생활지도를 하려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해보았다.

또한 일제 잔재, 유교 문화, 군사 문화에서 비롯되어 학교에서 이제는 관습이 되어 반성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고 자신들의 문화를 학교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학급 자치나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주인이 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다.

어른들은 가끔 울음의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울지 않는 아이를 원합니다. 그것은 잔혹한 일지요.

- 야누쉬 코르衩의 <아이들> 중에서

부적응 행동이란 정상적인 지적 능력이 있어도 부적절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집단의 기준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회·문화적 기대치에서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부적응 행동은 유전적, 신경학적 요인들에 의한 생리적 원인과 유아기에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즉 거절, 거부, 질책, 일관성 없는 상벌 등 부모 자녀간의 상호 작용에서 초래된 환경적 요인, 그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실패 경험이나 좌절 등도 원인이 된다. 즉 부모의 지나친 기대, 과도한 경쟁, 학업 실패로 인한 좌절감 등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이것이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물리적 환경으로서 복잡하고 소란한 환경, 위험을 느끼게 하는 주거

환경, 가정의 경제적 빈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생리적인 원인이나 물리적 환경은 학교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고, 환경적 요인도 부모 교육이나 상담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학교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에 학교에서 아예 모른 척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생리적, 환경적 요인은 학교 안에서 일정 부분 돌보면서 적극적으로 부모와 치료적 측면과 부모의 지지적 역할을 상의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거나 물리적 환경은 지역아동센터나 기관의 가정복지사 등과의 연계로 지역 사회와 공동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부모의 지나친 기대, 과도한 경쟁, 새로운 시대에 변화되지 못하는 교육과정, 선형학습, 학업 부진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실패 경험이나 좌절감 등 학교에서 원인을 제공해온 부적응 행동은 지금껏 처벌 위주의 해결 방법에서 부정적이고 왜곡된 태도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벌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아직은 역부족이고 한계를 지닌 방법이지만 학교 안에서 생활지도부 나름대로 문예체지원 자율영역의 부적응아 지도를 위한 예산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해보았다.

우선 폭력, 금품갈취, 따돌림이나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등 부적응 행동 중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의 한계를 지어주기 위해 학교 규정에 있는 징계와 더불어

첫째 학교 인근 상담지원센터에 학생이 자신의 현재 모습에서 변화하고 싶은 모습과 학교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조화롭게 상담 목표로 정하여 10회기의 상담을 받도록 하여 한 학기 동안 분노 조절, 목표 세우기,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둘째 인권단체 활동가에게 인권의 의미와 필요성, 존중과 배려의 의미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셋째 치유하는 글쓰기 특별교육을 마련하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넷째 약한 학생을 괴롭히거나 따돌림으로 부적응행동을 보인 학생은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더불어 사는 모습을 실제로 체험하여 도덕성에 대해 훈계나 설득이 아니라 괴롭히는 힘만이 아니라 나누는 힘이 자신 안에 있음을 스스로 느끼도록 해 보았다.

다섯째 “몸동작으로 자아찾기” 프로그램인 < 춤테라피 >를 통해 심신의 긴장을 풀고 분노를 해소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여섯째 “놀이연극을 통한 자아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도 모른 채 자신의 행동을 지배해 온 분노와 갈등의 요인을 되짚고 풀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번째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에게 “용기있는 신고”라 하여 타인으로 인해 힘든 학교생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기회를 주고, 피해자 위주로 생활지도부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여 학교란 공간이 안전한 곳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힘든 상황을 참거나 피해학생이 학교를 회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방

법이 가장 중요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일단 학교가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폭력이나 금품 갈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피해학생 스스로 피해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괴롭힘을 주도하던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후에 이어질 총체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사회생활의 방법 익히기와도 연결될 것임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성장 소설, 동화, 수필집과 폭력 예방, 흡연의 문제점, 인권, 직업 소개 등의 책을 비치하여 다양하게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읽히고 있다.

다음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지 않지만 자존감이 낮아 무기력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첫째 지각이나 결과 등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 적응 못 하는 학생들은 상담센터나 학교내 상담선생님과 시간 관리, 효율적인 학습 방법,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둘째 아직도 학교 안에서 강제되는 ‘학생다움’에 의한 가치관 갈등 때문에 부적응행동으로 분류되는 화장하는 여학생들에게는 “미술놀이를 통한 자아찾기” 프로그램 < Make up! Wake up!>을 통해 화장의 의미, 자기 얼굴에 맞는 화장법, 진로와의 연결 등 표면적인 문제해결 만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을 목표로 1년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놀이의 중요성과 점점 개별화되어가는 아이들 게임에서 조금이나마 공동체 놀이와 몸의 부딪힘으로 정서를 교감하고 사회성을 발달을 목표로 전래놀이반을 진행했다. 축제 때 규모는 작지만 놀이마당에 온 아이들은 전래놀이반에 준비한 놀이에 단순 참가만 하는 서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변형해가며 즐겁게 참가하기도 하였다. 내년에는 전래놀이반 아이들이 익힌 전래놀이로 점심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놀이마당을 순간 개설하면서 즐거움을 주려고 한다.

넷째 아이들이 많이 찾고 머무는 학교 매점 주변을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영리중 나름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학급에 광고를 내어 신청자를 받거나 학급담임의 협조로 소극적인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들 중에서 그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추천받아 자신들의 송씨와 참여로 그려낸 담벼락벽화가 성취감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목표로 담벼락벽화를 공동으로 그렸다.

각각의 심장이 품고 있는 서로 다른 난제들이 똑같은 교복에 갇혀 있습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는 수백의 다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서로 다른 난제이고, 서로 다른 과업이며 서로 다른 염려와 관심을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 야누쉬 코르착의 <아이들> 중에서

<참고자료6> 인권의 바람으로 학교폭력을 잠재울 제도와 교육, 어떻게 접근할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연결짓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이유입니다. 하나의 고정된 정답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될 때 진정한 배움이 싹튼다. 강요와 통제에서 벗어나 자존과 자율을 익힐 수 있는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교육,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 다름을 틀림으로 치부하는 것, 그것이 곧 차별의 끝과 시작입니다. 정체성의 차이, 태고난 환경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평생 '겁먹은 시민'을 만듭니다.

: 경쟁에서의 낙오, 불안사회의 위협으로 학생을 겁주는 교육, 학생을 단속과 적발, 처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교육 속에 성장한 사람은 자신도 이웃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릴까봐, 혼날까봐 겁을 집어먹은 채 성장한 사람은 정부에 대해서도 겁을 집어먹고, 평생 사회가 조성한 불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입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대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포기하고 유예한 사람에게 행복한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내일입니다.

- 차별에 침묵하는 교육이 폭력에 갇힌 사회를 만듭니다.

: 때리는 행위만이 폭력이 아니라, 모든 차별이 곧 폭력입니다. 또한 모든 폭력은 차별의 고리를 타고 흐릅니다. 차별을 당연시하는 교육, 질서나 '~다음'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을 죽이는 교육, 차별을 외면하는 교육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에 맞설 때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도 땃리를 틀기 어려워집니다.

-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웁니다.

: 책임은 자유의 반대말이 아니라 비슷한말입니다. 책임은 자유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자유가 책임의 전제조건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 결정일 때 그 결과에 진심으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받은 사람이 동료와 사회에 대한 정당한 관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 두려움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을 때 자존감도 싹튼다.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낙인, 불이익,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힘도 커집니다.

-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폭력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은 대로 이웃을 대하는 법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는 힘을 갖고 있듯이, 인권을 존중받아본 사람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는 힘을 갖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과정을 일상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방관자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변화의 핵심 의제로 삼은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끊임없는 시도와 시행착오 속에서 성숙해 나갑니다. 실수할 권리, 실수를 통해 배울 권리가 보장돼야 성숙할 기회, 책임질 기회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수가 치명적 실패가 되지 않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주주의는 식탁과 교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민주주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에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이 배움을 익혀가는 교실에서부터 경험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웃을 민주적으로 대하는 사회,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너머

■ 입법의 필요성

○ 뿌리 내리지 못한 학생 인권

통제와 처벌 중심의 학생생활규정,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등으로 학생의 기본권과 학습권이 침해되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대리전을 치루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 선호·탈학교로 이어지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대법원 제소 등 잇단 교과부의 공격으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 또한 보수진영과 교과부는 끊임없이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며, 최근에는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음. 그러나 이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개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임. 이에 학생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입법적,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학교폭력 정부대책의 폭력성

2012년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은 학생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무시해 온 '폭력의 학교'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음. 그럼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폭력의 숙주인 학교의 구조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학생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고 겁박하여 처벌, 치료의 대상으로만 분류하고 있음. 또한 개악된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서는 학생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엄격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그 징계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까지 장기 기록하도록 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반교육적, 반인권적인 학교폭력 정부대책을 바로잡고, 학교현장에 인권문화를 꽂피우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입법이 추진되어야 함.

○ 방치되어 있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인권

최근 사회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붕괴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탈학교 청소년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종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인권에 관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조례의 규범력이 가정과 사회에까지 미치지는 못하였음. 이에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학교를 너머 가정, 지역 사회로 확대시키기 위한 아동청소년인권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운동본부에서는 '폭력의 학교'를 너머 '인권의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모두 보장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징벌'이 아닌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동반개정을 추진함.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확대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역시 함께 추진하고자 함.

■ 주요 입법 방향

1. 인권친화적 학교법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 체벌금지, 두발규제금지, 강제학습금지 등 금지되는 인권침해행위 명시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제18조의4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이 선언적,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 이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다시금 확인하고, 체벌금지, 두발규제금지, 강제학습금지 등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금지되는 인권침해행위를 명시함. 또한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학교구성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함.

-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 된다고 하면서도 이어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을 개별 학교의 학칙에 포괄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개별 학교가 학생회 등 학생의 자치기구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주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학생자치활동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학생회가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

- 학생 징계 관련 적법절차 보장

가. 징계사유 제한

법치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제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기본권 제한의 최소한의 기준 조차 정하지 않은 채(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징계사유 "교육상 필요한 경우",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퇴학사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다) 이를 학칙에 포괄 위임함으로써 학교장의 자의적인 징계 및 불이익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에 학생의 기본권 제한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로써 징계사유를 엄격하게 함(미국 킹카 판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간섭인 경우와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고 단순히 소란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학생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학생징계위원회로 일원화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의 철도행위에 대해서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학생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이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징계의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가령 학급 친구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경우, 이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음. 특히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선도 사안으로 분류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으로 학생부 기록을 피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관된 생활교육과 문제행동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학생 징계를 학생징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학생징계위원회에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함.

나. 학생징계시 친권자 외 대리인 참여 보장 및 모든 징계처분에 대하여 학생의 재심 청구권 보장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제18조에서 학생징계시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학생의 경우 퇴학 등 징계시에도 부모가 생업 등의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퇴학처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학생징계시 실질적인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이 지정한 대리인이 학생을 위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퇴학처분뿐만 아니라 모든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상담교사, 특수교사 확대 등 교육복지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그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의 학습 환경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2010년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의 경우 21.6명, 중등의 경우 23.9명인데 반하여, 한국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의 경우 30명, 중등의 경우 35.3명임). 그러나 이러한 과밀학급 상황에서 교사가 개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기란 사실상 어려움. 이에 학생의 학습권 실현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평균 20명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교사가 특정 학생에 대하여 개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을 위한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과정편성권 및 평가권 보장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은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춘 자격있는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임. 그러나 현재 교사는 국가로부터 이미 가르칠 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선택부터 평가 내용에 대해서까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함(물론 교사의 자의적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경우 당연히 법적 제약이 따르겠지만, 그것은 교원 징계 등 부가적 처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뿐, 처음부터 교사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이에 자격 있는 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관료의 전제적인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명시하고, 교사회를 법제화함으로써 교사회가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서 채택 등에 있어서 일차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함. 또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막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 자신의 손해 및 학생·학부모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

현재 학교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 교원 자신이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입거나, 학생·학부모에게 재산상·신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원이 개인비용으로 치료, 변상하는 등 교원 개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재산상·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교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선부담하고 사후에 국가가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학부모에게 재산상·신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재의 징벌 중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폭력사안에 대한 다양한 원인 파악, 학생의 치유와 복귀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솔루션 위원회'로 역할 변경함. 따라서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상담가, 갈등조정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으로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가 아닌 화해와 조정, 그리고 실질적인 솔루션 제안과 실행 권한을 가지도록 함. 또한 학교폭력화해조정위원회는 가피해 당사자에 대해 조치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토론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학급전체에 대한 인권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해당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고 지원할 책무를 부과함.

2. 폭력의 학교 대책법

○ 인권을 보장하는 회복적 사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징계 이전에 학교에 화해조정절차를 도입

현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전담기구에서는 조서를 작성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처벌 수위만을 결정하는 징계 절차만이 작동할 뿐 피해, 가해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돋는 교육적 절차는 없음. 그러나 이와 같이 학생들간 화해와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처벌은 오히려 가해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반발심과 보복의 감정을 가지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피해학생의 치유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이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화해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징계 이전 화해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이러한 방식은 현재 각 법원의 소년부에서 화해권고제도로 시행하고 있음. 2010년 처음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한 이후 그 성과가 좋아 전국의 각 법원으로 확대).

- 학교폭력화해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학생, 교사, 학부모, 갈등조정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으로 하고, 실질적인 솔루션 위원회로 역할 변경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주로 가피해 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 이 높은 교사, 학부모로 구성이 되고 그 조치사항 역시 주로 징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체에 대한 민원제기도 적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

- 학생의 징계 관련 정보의 보호

현재 교과부훈령인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한 징계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졸업 후 5년간 보존하여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로 인하여 학생이 스스로 변화할 기회마저 포기하게 만들므로써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의 재발방지 및 예방에도 기여하지 못함. 또한 학생선도위원회에 의한 징계나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학생징계위원회의 조치사항, 학교폭력화해조정위원회의 조치사항과 같이 학생의 인격과 밀접히 관련된 정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집·보존하지 않으며, 학교는 학생의 징계 정보에 관하여 학생이 동의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할 수 없도록 함(이로써 현재 법률의 근거 없이 학생 징계에 대한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교과부훈령은 실효됨)

